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동진이공 협력사 행동규범



번호	제.개정일	주요개정내용	비고
0	25.12.17	협력사 행동규범 신규제정	
1	26.04.01	4-8) 이주노동자 보호 신설 6-9) 위반 시 제재 및 계약 해지 신설	1차 개정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제정일자: 2025.12.17

시행일시: 2026.01.01

1차 개정일: 2026.04.01 (이주노동자 보호·위반 제재 조항 신설)

< 목차 >

1. 개요
2. 윤리
 1. 투명경영
 2. 불공정 거래 방지
 3. 정보보호
 4. 책임 있는 자재구매
 5. 수출제한 준수
 6. 이해상충 방지
 7. 위조부품 방지
 8. 지적재산 보호
 9. 원자재 수급관리
3. 환경
 1. 환경 경영체계
 2. 수자원(용수/폐수) 관리
 3. 온실가스 관리(에너지 사용)
 4.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5. 대기오염물질 관리
 6. 화학물질 관리
 7.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4. 노동/인권
 1. 차별 금지
 2. 인간 존중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4. 근로시간 및 복리 후생
 5. 인도적 대우
 6. 결사의 자유
 7.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8. 이주노동자 보호

5. 안전/보건

1. 안전 보건 체계
2. 비상상황 대응
3. 설비 등의 안전관리
4. 사고 관리
5. 보건 관리
6. 안전진단

6. 운영시스템

1. 행동규범 공유(공시)
2. 교육 및 소통
3. 리스크 관리
4. 정보 관리
5. 고충처리 제도운영 (신고제)
6. 담당자 선임
7. 규범준수
8. 거래업체 관리
9. 위반 시 제재 및 계약 해지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1. 개요

1. 동진이공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협력사의 거래 업체는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최근 자동차 산업은 미래 지향적(전동화, 모빌리티 등)인 혁신이 진행 중이며, 동진이공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복하고자 한다. 본 행동규범은 모든 협력사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의 운영 시스템 각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요구한다. 동진이공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과를 이루어 상호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해 동진이공은 운영 과정상 발견된 리스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협력사는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를 취하며,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다. 또한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가 협력사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본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동진이공과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본 행동규범은 동진이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음)

2. 윤리

1) 투명 경영

(1)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횡령, 청탁, 공갈, 알선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 등을 이용한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는 안 된다.

(2) 의심되는 거래가 신고(채널)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신고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불공정 거래 방지

(1) 협력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협력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3) 협력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한 경우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정보보호

(1) 협력사는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허가나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협력사는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보존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4) 책임 있는 자재구매

(1) 협력사는 분쟁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협력사는 생산 과정의 에너지 집약적 공정(알루미늄), 삼림벌채(고무, 목재) 및 삼림벌채법(EUDR)이 규제하는 원자재(팜유, 코코아, 커피, 콩, 쇠고기)와 같은 원재료의 인증현황 및 규제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2) 협력사는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위반 등의 이슈와 관련성 없음을 인증여부 자체 확인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협력사는 공급망 내 직,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해 제조된 원재료, 부품/구성품들을 공급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출제한 준수

(1) 협력사는 관련 법률과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며, 수출제한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령 및 규약 준수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동진이공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6) 이해상충 방지

(1)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협력사는 부적절한 이익 목적으로 약속, 제안, 허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7) 위조부품 방지

(1) 협력사는 승인된 원재료만 사용해야 되며 위조된 원재료나 부품 등을 사용해서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는 안 된다.

(2) 협력사는 위조된 재료 및 부품 사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발견 시 즉시 동진이공에 통보한다. 또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목적/계약조건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지적재산 보호

(1) 협력사는 동진이공/거래처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 자체 지식재산권도 보호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침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9) 원자재 수급관리

(1) 협력사는 원자재 취급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쟁광물 외 광물(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취급함에 있어 OECD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 환경

1) 환경 경영체계

(1) 협력사는 사업장의 환경경영을 위해 점검과 성과관리 등 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한다.

2) 수자원(용수/폐수) 관리

(1) 협력사는 양질의 용수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협력사는 용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및 그 이상을 관리하고 준수해야 한다.

3) 온실가스 관리(에너지 사용)

(1)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2) 협력사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한다.

4)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1) 협력사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2) 협력사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실적 관리한다.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3) 협력사는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대기오염물질 관리

(1)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협력사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 화학물질 관리

(1) 협력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2)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조달, 생산, 판매, 유통과정) 및 조치 이행에 노력한다.

7)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1) 협력사는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 확대 위해 사업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및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하고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할 경우는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4. 노동/인권

1) 차별 금지

(1) 협력사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승진, 교육, 훈련)를 하지 않는다. 또한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원에 대한 성희롱, 정신적, 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 협력사는 임직원 채용 면담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

2) 인간 존중

(1) 협력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원을 존중한다.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협력사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한다.

(2) 협력사는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따돌림, 협박 등 하지 않는다.

4) 근로 시간 및 복리후생

(1) 협력사는 근로시간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하며 근로에 합당한 보수(초과수당포함)를 지급한다.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2)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법정 교육은 준수해야 한다.

5) 인도적 대우

(1) 협력사는 전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2) 협력사는 정신적, 육체적 강압, 학대 행위는 하지 않는다.

6) 결사의 자유

(1) 협력사는 결사의 자유 및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협력사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7)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1)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과 관련된 법령 위반하는 거래업체는 거래 중단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협력사는 법률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3) 협력사는 연소자 고용시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 하지 말아야 하며, 연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소자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협력사는 동진이공에 공급할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하지 않으며 강제노동규제를 위반하여 공급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강제노동규제'에는 국제연합(UN), 미국(관세국경보호청), 유럽연합(EU), 영국, 대한민국 또는 기타 정부 관계당국이 강제노동의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부과, 시행/집행하는 법령, 시행령, 조례, 규칙 또는 조건(강제노동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제작된 제품의 수입금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포함한다.

(5) 협력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이 명시된 행동규범을 제정한다. 또한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등을 협력사가 공급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임직원 및 거래처들에게 행동규범 및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와 협력사의 공급망에 강제노동이 확인될 경우 시정계획 조치 진행과 강제노동 이용 상황 및 그 시정조치에 대한 정보를 동진이공에 즉시 제공한다.

(6) 협력사는 협력사 거래 업체가 판매한 제품(직, 간접)이 생산에 강제노동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업체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를 동진이공에 알려야 한다.

【신설 항목 — 2026년 1차 개정】

8) 이주노동자 보호

(1) 협력사는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채용비용 부담 금지 : 협력사는 이주노동자가 취업을 위해 채용대행 수수료, 알선비, 비자 취득비용, 교통비, 숙소 보증금 등 어떠한 형태의 비용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부담한 비용이 확인될 경우 협력사는 이를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3) 여권·신분증 압수 금지 : 협력사는 이주노동자의 여권, 신분증, 거주증, 비자 등 신분 관련 문서를 압수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 목적으로 보관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의 서면 동의 및 언제든지 반환 요청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4) 고용계약 자국어 제공 의무 : 협력사는 이주노동자와 계약 체결 시 해당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작성된 고용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복리후생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구두 약속이나 이해 불가능한 언어로만 된 계약서는 무효로 본다.

(5) 이주노동자 특화 보호조치 : 협력사는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거주지를 변경하고 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②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내국인 동일 직무 근로자와 동등하게 지급하며 부당 공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고충처리 채널 이용 방법을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한다.
- ④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협력사는 관련 사항을 동진이공에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1) 안전 보건 체계

(1) 협력사는 안전 및 보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 절차, 결과 등의 관리 체계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한다.

(2)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 보건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한다.

2) 비상상황 대응

- (1)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대비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
- (2)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대비 시설 전반(탈출로, 유도등, 경보기, 화재 감지기, 소방시설) 정기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3) 설비 등의 안전관리

(1) 협력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점검, 평가 관리한다.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2) 협력사는 안전시설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방호벽 등을 설치 운영 관리해야 한다.

(3)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 및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4) 사고 관리

(1)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며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시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보건 관리

(1) 협력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설 제공 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안전진단

(1) 협력사는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 및 유해인자 노출을 확인하고 정기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실시 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리고 시정(기계, 기구, 설비)을 요할 시 개선해야 한다.

(2) 협력사는 수급인이 회사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 안전 및 보건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3)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공 및 비치해야 하며 임산부, 연소자 등은 안전 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6. 운영 시스템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1) 행동규범 공유(공시)

(1) 협력사는 행동규범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사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공시)해야 한다.

(2) 협력사는 행동규범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전파해야 한다.

(3) 협력사 행동규범을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1회 협력사로부터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서명을 100% 접수하여 관리한다.

2) 교육 및 소통

(1) 협력사는 행동규범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3) 리스크 관리

(1)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정보 관리

(1) 협력사는 행동규범에 명시되는 각 분야의 현황과 리스크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정보공개(국가별 법령, 산업단체, 사업 계약)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한이 없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고충처리 제도운영 (신고제)

(1)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여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의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제보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6) 담당자 선임

(1) 협력사는 사회적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관리자를 선임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7) 규범준수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1) 협력사는 본 행동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적절한 문서로 관리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2) 협력사는 동진이공 또는 동진이공이 지정한 자가 점검 및 방문 시 본 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협력사는 본 행동 규범의 준수를 위한 실행계획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8) 거래업체 관리

(1) 협력사는 제조관련 계약을 맺은 거래 업체에게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협력사는 법률 및 규정(상기 항)을 위반한 사실 확인 및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 업체에 개선 권고해야 한다.

【신설 항목 — 2026년 1차 개정】

9) 위반 시 제재 및 계약 해지

(1) 동진이공은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경우, 아래 3단계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1단계 (경고·개선 권고) : 위반 사실을 협력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시정조치계획(CAP)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② 2단계 (거래 제한) : 시정조치계획 미제출 또는 이행이 미흡한 경우 신규 발주 중단, 거래 물량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3단계 (계약 해지) : 반복적 위반, 시정 거부 또는 아래 제(3)항의 즉시 해지 사유 해당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협력사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을 저지른 경우, 동진이공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① 강제노동·아동노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이주노동자 여권·신분증 압수 또는 채용비용 착취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하였음에도 은폐하거나 개선을 거부한 경우

	회 사 규 정	제정일자	2025.12.1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일자	2026.04.01

④ 동진이공의 현장점검·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⑤ 분쟁광물 관련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시정조치계획(CAP) : 협력사는 동진이공으로부터 CAP 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원인 분석, 시정 조치 내용, 완료 일정,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한 서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진이공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른 제재는 계약서상 위약금·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위반으로 인해 동진이공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부 칙 >

① 제정 시행일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시행일

1. 1차 개정 시행일 : 4-8) 이주노동자 보호 및 6-9) 위반 시 제재 및 계약 해지 조항은 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동진이공 주식회사

전화번호 : 054-762-2111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갑산공단길 123

대표자 성명 : 오 중 석

사업자(법인)번호 : 505-81-07337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삼원

전화번호 : 054-745-8220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620-22

대표자 성명 : 최원석 (인)

사업자(법인)번호 : 505-81-31496